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건설부령 제158호(1975年7月5日)

(개정1981年1月6日)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내에서의 광물채굴의 허가 및 광업권 설정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허가제한지역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광물채굴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광업권 설정에 관한 협의에 있어 동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금, 석탄, 중석, 동, 철, 연, 아연등의 주요 전략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자연보호지역
2. 문화재, 기암괴석, 폭포 및 천연수립지역 기타 주요 경관지역
3. 공원시설 및 집단 시설계획지역
4. 공원 및 그 주변의 도로 공원계획 상의 도로 등산로 또는 수로로 부터 관망상 노출이 현저한 지역
5. 절토, 굴착, 토석적재등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6. 공해발생 기타 자연경관의 현저한 해손이 우려되는 지역

제 3 조 (허가제한 광물) 별표에서 정하는 광물이 외의 광물에 대하여는 채굴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점용 또는 사용제한) 공원구역안에서는 광물의 제련시설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조경사업의 실시) ① 공원관리청이 광물의

채굴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경 사업계획서와 사업평면도, 조감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명서를 제출받아 조경사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의 표시
2. 채굴위치 및 방법
3. 조경사업의 기간
4. 조경사업의 규모, 공종, 사업량 및 사업비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조경사업비를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금고에 미리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조경사업비에 갈음할 금액이 예치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공원관리청은 조경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즉시 제2항의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사업의 공정이 80%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는 예치금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 ④ 조경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조경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대집행 할 수 있다.

제 6 조 (허가절차 등) ① 광물채굴허가를 신청하고 자활 때에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광산평가조사서(국립지질광물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기타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기관, 기술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매장량, 품위, 연간추정생산량, 가행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질광상도, 광구도(6

◇ 国内資料 ◇

천분의 1) 광업등기부등본 및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광장소 및 채광법에 관한 사항
2. 항내수 및 폐석잔토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광석의 운반에 관한 사항
4. 선광장 및 선광법에 관한 사항
5. 지장목벌채, 광산건축물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공원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 5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광업권설정에 관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고자 할때에는 공원법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의해 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공원보호구역등에의 준용) 이 규칙은 공원보호구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 9 조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서의 광물채굴허가와 광업권설정협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종별	기준
석 탄	연간 30,000 톤이상 생산규모로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금	연간 50kg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중 석	연간 정광 30 톤(woz 70%)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동	연간 정광 1,000 톤(cu 6%)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철	연간 정광 3,000 톤(Fe 56%) 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연, 아연	연간 정광 2,000 톤(Pbzn 각 50%)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석회석	연간 50,000 톤 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규 석	연간 정광 10,000 톤(Sio ₂ 99.5%) 이상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기 타	연간 정광 6,000 톤 이상 생산규모이거나 연간생산액 100,000,000 원 이상으로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